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2059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김남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김규범, 박밀알, 박해생, 정가온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11. 5.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9. 11. 5. 접수

제71171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18. 2.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28. 2. 1., 이자율 연 4.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보증을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인은 2020. 5. 5.부터 소외 은행에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은 2020. 8. 6.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20. 9. 21. 소외 은행에 보험금으로 39,166,604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 12. 26.부터 피고와 함께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 1/2지분에 관하여 2019. 11. 5.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9. 11. 5. 접수 제71171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소외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적극재산이 자신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모두 이전해 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이전에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소외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과다하지 않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1.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원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2020. 9. 21. 실제로 성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1, 2, 3, 4, 7, 8, 10, 12, 13, 14호증, 을1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에 있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계약은 2019. 11. 5. 체결되었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0. 9. 21.에 성립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고 또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5. 5.경에 발생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구상금채권 발생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② 더욱이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계약은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7. 7. 20.경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 협의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인의 1/2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하되, 소외인의 잦은 사업실패와 유책(외도)배우자로서 재산을 8 : 2로 분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시세 7억 4천만 원에서 담보대출 4억 8천만 원을 제외한 2억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소외인에게 분할 상환하며,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담보대출채무도 피고가 부담하며, 양육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실제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5천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7. 12. 21.경 협의이혼신고까지 마쳤다.

즉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2017. 7. 20.경 이루어진 재산분할협에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5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협의(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외에는 모두 2017. 7. 20.자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③ 소외인에 대한 보증기한은 2028. 2. 1.까지로 약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기 전을 비롯하여 그 이후인 2020. 5. 5.까지도 별다른 문제없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과 피고의 공동소유였던 바,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모두 양보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내용, 즉 ㉠ 최초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17. 7.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69,200,000원이고, 그 중 소외인의 지분은 384,6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 반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80,000,000원(위 채무가 소외인의 채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일반채권자에게 공여되는 적극재산은 없게 된다)에 이르는 점, ㉡ 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와 소외인은 전체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순 재산을 2억 8천만 원으로 하고, 그 중 분할의 비율을 8 : 2로 정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 아울러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자료나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점, ㉣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었음에 반해 소외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또한 피고 운영의 아파트 공부방 매각 대금 및 전 소유 아파트 매매대금 등 상당한 정도의 피고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 또한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우선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피고와

소외인이 혼인생활 중 형성한 전체 재산의 내역과 금액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아지도 않는다.

즉 피고로서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소외인과 사이의 재산분할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 발생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참조), 앞서 3.나.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별지